

4-5-12 학생후생 및 복지시설 운영 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예수대학교의 학생후생 및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다음의 학생후생 및 복지시설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.<개정 2017.11.21., 2023.2.28>

1. 보건실
2. 학생식당
3. 체력단련실
4. 동아리방
5. 복사실
6. 휴게실(남여, 야외)
7. 실내체육관
8. 샤워실

제3조(운영의 기본방향) ① 이 시설이 학생들의 후생보건 및 개인적인 취미활동 또는 단체적인 과외활동의 중심지가 되게 한다.

② 이 시설의 혜택이 전교생에게 균등하게 주어지도록 한다.

③ 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토록 한다.

제4조(학생지원위원회) 제3조의 기본방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반 사무는 학생처에서 담당하되 학생지원위원회가 이에 수반되는 제반 방침을 결정한다.

제5조(개방시간) ① 복지시설의 개방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되, 특별한 경우에는 학생처장이 개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 <개정 2023.2.28.>

② 토요일, 공휴일에는 개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, 사전 학교 승인을 얻어 진행하는 시설사용은 예외로 한다.

제6조(용도변경) 각종 복지시설의 기존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7조(비품관리 및 인수인계) ① 각종 복지시설의 기자재 또는 비품을 이용자가 고의로 파손할 때에는 변상 조치한다.

② 관리 운영의 인수인계는 반드시 학생처장의 승인 하에 행해져야 한다.

제8조(운동기구 대여) ① 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운동기구를 대여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단체대표가 학생증을 제출하고 운동기구 대여대장에 인적사항 및 대여품목을 기재하여야 한다.

② 운동기구의 대여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며, 토요일, 공휴일, 시

험 전주간, 방학 중에는 대여하지 않는다. 단, 사전에 학교의 승인을 받은 행사 등에는 예외로 한다.

제9조(보건실) 보건실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.<개정 2017.11.21.>

제10조(학생식당운영협의회) ① 학생식당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학생식당운영협의회를 둔다.

② 학생식당운영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총 7인 이내로 구성한다. <개정 2023.2.28.>

③ 협의회장은 학생처장으로 하고, 그 밖의 회원은 협의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, 학생회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. <개정 2023.2.28.>

④ 협의회는 개최는 필요에 따라 협의회장이 소집하며, 회의의 결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신설 2023.2.28.>

⑤ 협의회는 개최는 필요에 따라 협의회장이 소집하며, 회의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신설 2023.2.28.>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